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

이에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시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 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의2 제5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공립유치원(이하 “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① ----- ----- ----- ----- ----- ----- ----- ----- ----- ----- ---- 둘 수 있으며, 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수, 유치원 간의 이동 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야	<삭 제>

<u>한 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7163